

렌탈 가이드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전운전 길잡이 / 대여약관 및 세칙



안전벨트



차일드 시트



도난 주의

-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 차일드 시트 장착을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 도난에 주의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금지



차간거리 주의



우천시, 저녁 때
헤드라이트

- 운전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차간거리는 충분히 확보해 주십시오.
- 우천시, 저녁 때는 일찌감치 헤드라이트를 켜 주십시오.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교통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해 주십시오.



オリックス レンタカー

영업점 이름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보험 / 보상제도에 대하여(保険・補償制度について)

□ 보험 / 보상액(保険・補償額)

		보상액(補償額)	면책액(免責額)
대인(对人)	1명 한도액	무제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없음
대물(対物)		무제한(無制限)	50,000엔
차량(車両)	1사고 한도액	시 가 (時 価)	・ 마이크로버스,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복지차량 비포함) 100,000엔 ・ 2t 이상의 트럭, 더블캡 70,000엔 ・ 그 외의 차량 50,000엔
인신상해(人身障害)	1명에 대해 3,000만엔까지 ※ ※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후유장애 포함) 및 사망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 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실시).		

□ 면책보상제도 (CDW) (免責補償制度<CDW>)

만일의 사고 때 고객님의 부담하시는 대물/차량 보상의 면책액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가입료(24시간 단위)	가입하시면
아래 이외의 등급	1,100 엔 (세금 포함)	면책액 0엔
E·EE 클래스 이상, RE 클래스 이상, 2t 이상의 트럭, 더블캡, 마이크로버스, 알루미늄 밴 등 가장차 ※1 (복지차량 비포함)	2,200 엔 (세금 포함)	

※렌트 기간 도중의 가입, 해약은 불가능합니다.

※15일 이상 1개월 이내 대여계약에서는 15일분의 가입료로서 보상은 대여계약 기간으로 합니다.

※1 알루미늄 밴, 복지차량의 리프트 등의 특장부분은, 차량보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만, 면책보상제도는 대상외입니다. (특장 적재실부분 이외는 면책보상제도의 적용범위입니다.)

고객님의 부담에 대하여(お客様のご負担について)

□ 영업손해액 (NOC)(ノンオペレーションチャージ<NOC>)

만일 당사의 책임과 무관한 사고, 도난,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하여 차량의 수리 및 청소 등이 필요해진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부담하시게 됩니다(차내 장비의 손해, 시트의 구멍 등도 NOC의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운전하여 예정 영업점에 반환하신 경우 20,000엔

◆스스로 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주) 영업손해액은 면책보상제도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부담하시게 됩니다.

□ 차량 반송비(당사 지정 공장까지)의 15만엔(세금 포함)까지는 보상 범위가 되며, 그것을 초과한 부분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車両搬送費(当社指定工場まで)の、15万円(税込)までは補償の範囲内となり、それを超える部分はお客様のご負担となります。)

무사고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렌트카 안심 패키지 제도 (RAP) (レンタカー安心パック制度 (RAP))

- ① 만일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고객님의 부담하실 NOC 지불이 면제됩니다.
- ② 펑크가 났을 때에도 손상된 타이어의 수리대금 및 타이어대금이 무료입니다. (※1, ※2)
- ③ 초과 1시간까지 연장 요금 무료 서비스 (※3, ※4)
- ④ 이용기간 도중에 반환했을 경우, 통상 발생하는 중도해약 수수료 (차액의 50%)는 무료입니다. (※5)

렌트카 안심 패키지	가입료 (24시간마다)
하기 이외의 클래스 (※6)	660엔 (세금 포함)
E·EE·RE·ME·WA·EWA클래스 이상	1,320엔 (세금 포함)

※ 렌트 기간 도중에 가입·해약은 불가능합니다.

※ 15일 이상 1개월 이내의 대여계약에 대해서는 15일분의 가입료로서 보상은 대여기간으로 합니다.

※ 1 새 타이어는 원칙적으로 손상된 타이어와 동등한 것으로 구입합니다. (보상 상한액 2만엔)

※ 2 고객님의께서 손상 타이어의 수리대금을 일단 지불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단 반환 예정시간 1시간전까지는 연락이 필요합니다.

※ 4 영업시간 이내에 반환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 5 실제 이용기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6 2인 이상의 트럭, 더블캡, 마이크로버스, 알루미늄 밴 등 차량차 (복차량 제외)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로드 서비스에 대하여 (ロードサービスについて)

로드 서비스의 내용 / 범위 (ロードサービスの内容・範囲)

① 대응 차량에 대하여

◆ 전 차량

② 차량 반송 서비스에 대하여

◆ 1회 사고 등에 대해 15만엔 (세금 포함)을 상한으로 보상합니다.

◆ 15만엔 (세금 포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반송처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 등이 됩니다.

③ 긴급 시 응급 대응 서비스

◆ 계약하신 차량이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0분 정도에 대응 가능한 응급 대응을 실시합니다. 단,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작업 또는 보상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이전과 대비	서비스 내용	비고
배터리 및 엔진 부족 열쇠	배터리 점핑	○
	각종 밸브, 휴즈 교환	○
	30분 정도로 가능한 응급 대응	○
	냉각수 보충	○
타이어	도로상에서 연료 부족(※1)이 된 경우 연료 배달 서비스(휘발유 또는 경유 10리터)	○ (1렌탈 1회 한정)
	도로상에서 전기 부족이 된 경우 충전이 가능한 장소까지의 반송 서비스	○ (1렌탈 1회 한정)
타이어	내부에서 잠긴 경우 열쇠 개방(일반 실린더 열쇠)※2	○
	스페어 타이어와의 교환 작업. 주) 스페어 타이어를 장비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펑크난 경우 펑크 수리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까운 주유소 등으로 차량을 반송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 비용은 무상입니다.	○
	빠지거나 떨어진 바퀴 올림	○

◆ 눈길, 진창길, 모래사장 등에 의한 타이어 스톱크(공회전)나 슬립 등 단순히 주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로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손상 타이어의 수리 또는 타이어 대금은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신 경우, 사용 키트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1 연료 부족이란 연료가 떨어져 엔진이 걸리지 않는 상태

※2 렌트카 대여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분만 대응 가능

● 대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명과 운전면허증의 성명이 동일하다고 확인된 경우

● 대여증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명칭의 법인명과 동일한 명칭, 사원증 제시 및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된 경우

※ 일정한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 상기 이외의 서비스를 받으신 경우에는 현지에서 정산하셔야 합니다.

※ 이용 시에는 사전에 '손보재팬보험 사고·고장접수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사전에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수배할 경우 각 중 안내 및 수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로드 서비스의 일부는 당사가 체결하는 손해보험 서비스입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주의사항(注意事項)

□ 보험 / 보상제도 (CDW·RAP 포함) 가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 (保険・補償制度(CDW・RAP含む)が適用できないケース)

- ①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로 연락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②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 ◆ 주변에 방해가 되는(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
 - ◆ 음주 및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 ◆ 약물 사용
 - ◆ 무단 연장
 - ◆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인정한 부운전자 이외의 운전
 - ◆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
 - ◆ 무면허운전(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위반한 경우 포함)
 - ◆ 무단으로 합당한 경우
 - ◆ 각종 테스트/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을 견인/밀어주기에 사용한 경우
 - ◆ 그 외 렌탈약관(대여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사고 등
- ③ 당사가 체결한 손해보험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고의에 의한 사고
 - ◆ 열쇠 분실/파손
 - ◆ 고객님의 소유, 사용, 관리하시는 재산의 손해
 - ◆ 지진 및 분화, 또는 이들에 의한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 ④ 사용,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 열쇠를 걸어둔 채 또는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하여 도난을 당한 경우
 - ◆ 사용 방법이 열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체 등의 손상 및 부식으로 인한 손해
 - ◆ 차내 장비의 파손
 - ◆ 장비품의 분실/파손
 - ◆ 휠캡 분실 등
 - ◆ 타이어 체인, 캐리어, 차일드 시트의 부착 및 장착 불량으로 인한 손해
 - ◆ 해안, 하천부지 또는 숲 등 차도 이외에서 주행한 경우의 차량 손해(유지 및 관리된 도로 이외에서의 사고)
 - ◆ 주유 시 연료 종별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 크레인이나 고소작업차 등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하여 발생한 손해
 - ◆ 크레인, 덤프 등 장비 장치의 조작, 사용 및 보관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
- ⑤ 기타
 - ◆ 크레인 차량 크레인 본체의 손상(아웃트리거를 포함)
 - ※ 상기의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손해 또는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실비 부담이 됩니다.
 - ※ 상대방 불명의 뺑소니, 차량 도난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상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가해자 불명인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하여(相手不明の当て逃げ事故等について)
 보험·보상제도를 적용하려면 사고 시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정해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여 도중 차량에 탑승(승차)하실 때는 그때마다 외장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옵션 장비 장착 확인에 대하여(オプション装備の装着確認について)
 옵션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스스로 장착해 주십시오. 당사 직원이 대신 장착해 드리는 경우라도 최종 확인은 고객님의 스스로 해 주십시오.

□ 카 내비게이션 사용상의 주의(カーナビ使用上のご注意について)
 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의 경로 안내를 보조하는 기기이며, 사용 중 주행 상태나 주행 장소에 따라 잘못된 표시 또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의 교통규칙 및 도로표지에 따라서 운전해 주십시오.
 잘못된 표시 또는 안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소정 시간의 차이 등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 반환 시간에 대하여(ご返却時間について)
 각 영업점의 영업 시간 내에 반환해 주십시오. 예정 반환 시간을 변경하실 경우 또는 반환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발하신 영업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무단으로 연장하신 경우에는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연료에 대하여(燃料について)

연료는 원칙적으로 완충 상태로 대여하므로 자동차 업체가 지정하는 연료로 완충시킨 후에 반납해 주십시오.
 셀프 주유소의 경우, 유종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른쪽의 급유 방법에 따라 급유해 주십시오.
 자동으로 멈춘 시점을 연료 완충으로 봅니다.
 ※반납 시에는 급유 명세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해 연료 충만 상태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주행거리 한산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그 경우 실제의 급유 금액보다 약간 비싸게 나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요금은 영업점에 따라 다릅니다.

급유 방법

1 급유 노즐을 깊숙히 꽂아 넣고 레버를 단단히 잡고 급유를 시작해 주십시오.

2 급유기가 자동으로 정지(찰칵하는 소리가 납니다)하면 급유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유하지 마십시오.

찰칵!

무사고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분실물에 대하여 (お忘れ物について)

반납하실 때 분실물이 없는지 고객님의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실물을 택배로 보내드릴 때는 착불로 발송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 방치 주차위반에 대하여 (放置駐車違反について)

만일 방치 주차위반 티켓이 붙어져 있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소정 절차를 완료**해 주십시오.

소정의 금융기관에서 **범칙금 납부**를 완료해 주십시오.

반환 시에 **‘교통위반 고지서’** 및 영수 날짜가 있는 **‘납부서/영수증 등’**의 서류를 확인합니다.

※ ‘교통위반 고지서’ 및 ‘납부서/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으시면(범칙금 납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지불하시게 되므로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차종별 주차위반 위약금액

보통자동차

25,000엔

중형자동차 이상

30,000엔

※ 중형자동차 이상이란 최대 적재량 3t 이상, 차량 총중량 5t 이상, 승차정원 11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입니다. (차종별 구분과 면허종별 구분은 다릅니다.)

※ 후일 범칙금을 납부하여 ‘교통위반 고지서’ 및 ‘납부서/영수증 등’을 제시하시면 위약금을 반환해 드립니다. 반환해 드릴 때는 지정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입금 수수료는 고객님의 부담이 됩니다.

※ 범칙금 납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및 위약금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의 시스템에 등록되므로, 이 협회에 가맹한 렌터카회사는 해당 고객님의 대해 이후 렌터카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고 / 고장에 대하여 (事故・故障について)

◆만약 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사고의 경우

부상자 구출

현장에서 경찰에 통보

상대방의 확인

고장의 경우

차량에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해 주십시오.

아래의 통역 서비스 창구로 연락주십시오.

092-285-9603

※ 가장 먼저 ‘등록번호 (차량번호)’ 와 ‘출발한 렌터카 점포명’ 을 알려주십시오. 점포명은 렌터카 대여증의 왼쪽 아래 또는 이 대여 가이드 표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대가 없는 단독 사고 및 ‘주차장에서 옆 차량의 문을 건드렸다’, ‘후진할 때 범퍼를 보도블록에 긁었다’ 등 아무리 작은 흠집이나 패임이라도 렌터카 차량 또는 상대 차량 (대상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사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경찰 및 당사로의 신고 등 소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님의 전화를 주시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릅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일본의 주된 도로표식(日本の主な道路標識)

◆규제 표식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



차량통행 금지



진입 금지



속도 제한



지정방향 외 진행 금지



일방통행



서행



일시 정지

◆보조 표식



지시 구간의 끝



주차장 시간제한

◆경계 표식



건널목 있음



미끄럼 주의

◆안내 표식



방면, 방향 및 도로의 통칭명 예고



방면, 방향 및 도로의 통칭명 예고



방면, 방향 및 도로의 통칭명 예고



전용 통행선



횡단보도



휴게소



입구의 예고



방면, 차선 및 출구의 예고



비상 전화



비상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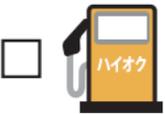
※중대한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사고인지 아닌지 불문),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료에 대하여(燃料について)



◆레귤러

「레귤러」는 옥탄 함유율이 약 90%의 가솔린을 말합니다.



◆하이옥 (고옥탄가)

「하이옥」는 옥탄 함유율이 약 98 ~ 100%의 가솔린을 말합니다.



◆경유 (디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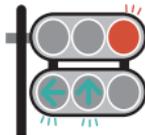
「경유」는 디젤차 전용의 디젤 연료를 말합니다.

연료에는 「레귤러」 「하이옥 (하이옥탄의 약어)」 「경유」의 3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 렌탈 차량에 따라 급유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가솔린을 급유하면, 차량이 고장 날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연료를 급유했을 경우, 렌탈 회사에서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며, 이 수리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하에 됩니다.

무사고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규칙의 주의점 (交通ルールでの注意点)

- ◆일본에서 자동차는 좌측통행입니다.
- ◆빨간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파란색 화살표 신호일 경우는, 노란색 신호나 빨간색 신호일 때에도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는 도로교통법에 전석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동승자를 막론하고 전원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일드시트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일반도로, 유료도로를 포함하여 모든 도로에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엄수하여 안전운전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 속도단속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한속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령에 정해진 특정장소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 ◆음주 운전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스마트폰의 사용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유료도로) 를 통행하는 경우의 주의점

(高速道路(有料道路)を通行する場合の注意点)



고속도로 (유료도로) 에는 “ETC 専用 (ETC 전용)” 이라고 쓰여진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라는 의미입니다. 이 게이트는 ETC 탑재기와 전용 ETC 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TC 탑재기와 전용 ETC 카드를 장착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 이라고 표시된 게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단, 요금정산은 입구에서 지불하는 경우와 출구에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약관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貸渡約款を必ずお読みください)

대여 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 (이하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이라고 함) 의 규정에 따라 대여자동차 (이하 ‘렌트카’라고 함) 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빌리는 것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제 8 조 3 항에 의해 임차인과 상이한 운전자를 지정한 경우는, 그 운전자에게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주지시키고 준수하게 합니다. 또한,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합니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 신청)

임차인은 렌트카를 빌리는 데에 있어서, 약관, 세칙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후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차량 등급, 렌트 개시 일시, 렌트 장소, 렌트 기간, 반환 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등의 부속품 필요 여부, 기타 렌트 조건 (이하 ‘렌트 조건’이라고 함) 을 명시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의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약 변경)

임차인은 앞 조 제 1 항의 렌트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 4 조 (예약 취소 등)

임차인은 당사의 승낙을 받아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예약한 렌트 개시 시각을 1 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계약 (이하 ‘대여계약’이라고 함)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3 앞 2 항의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불이 있었을 때,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4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위약금으로서 앞 항에 규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 상당액 (단, 소비세, 지방 소비세를 제외한 금액) 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예약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등의 사유,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트카 반환 지연 또는 천재 지변 등 임차인 혹은 당사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에 따라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혹은 사전에 예약된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예약 신청 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5 조 (대체 렌트카)

-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을 받은 차종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렌트카 (이하 '대체 렌트카' 라고 함) 대여를 제의할 수 있습니다.
- 2 임차인의 앞 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때와 동일한 렌트 조건으로 대체 렌트카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 대여 요금에 예약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질 때는 예약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예약된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때는 해당 대체 렌트카 차종 등급의 대여 요금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3 임차인은 제 1 항의 대체 렌트카 대여의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 앞 항의 경우,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때에는 제 4 조 제 4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취급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을 포함해 동항에 정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5 제 3 항의 경우, 예약된 차량 등급의 렌트카를 대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사고, 도난, 미반환, 리콜, 다른 임차인에 의한 렌트카 반환 지연 또는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는 제 4 조 제 5 항의 예약 취소에 준하여 취급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합니다.

제 6 조 (변칙)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4 조 및 제 5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그 어떤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예약 업무 대행)

-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취급하는 여행 대리점, 제휴 회사 등 (이하 '대행업자' 라고 함) 에서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대행업자에 대해 앞 항의 신청을 실시한 임차인은 제 3 조 및 제 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업자에 대해서만 예약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대여계약 체결)

임차인은 제 2 조 제 1 항에 정하는 렌트 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세척 및 요금표 등에 의한 대여 조건 (이하 '대여 조건' 이라고 함) 을 명시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대여할 수 있는 렌트카가 없는 경우,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 9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본조 제 3 항 내지 제 5 항 등 기타 대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임차인의 정보 제공 또는 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정한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 (주 1) 에 따라 대여부 (대여원표) 및 제 1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여증에 운전자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 (주 2) 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운전자 (이하 '운전자' 라고 함) 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인 경우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를 경우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여하는 차량이 마이크로 버스인 경우, 당사는 위의 내용에 덧붙여 '주행 구간 또는 목적지', '이용자 수', '사용 목적'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주 1)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통달 '렌트카에 관한 기본 통달' (自旅 제 138 호 1995 년 6 월 13 일) 의 2. (10) 및 (11) 의 내용을 뜻합니다.
(주 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 92 조에서 규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 조 별기 양식 제 14 의 서식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07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준합니다.

4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당사가 지정하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또한 제출된 서류의 사본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5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렌트 기간 중에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하기 위한 휴대전화 번호 등의 고지를 요구하고, 임차인 및 운전자는 이에 따릅니다.

6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제 2 항의 지불을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지불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대여계약 체결 거부)

임차인은 다음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1) 대여하는 렌트카의 운전이 필요한 운전면허증 제시가 없을 때.
- (2) 술을 마신 느낌이 있다고 인정될 때.
-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될 때.
- (4) 차일드 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 세 미만 유아를 동승시킬 때.
- (5) 폭력단,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기타 반사회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때.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사는 대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예약할 때 정한 운전자와 대여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 (2) 과거의 대여에서 대여 요금 지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 (3) 과거의 대여에서 제 18 조 각호에 열거한 행위가 있었을 때.
 - (4) 과거의 대여 (다른 렌트카 사업자가 실시한 대여도 포함) 에서 제 19 조 제 7 항 또는 제 24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을 때.
 - (5) 과거의 대여에서 본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에 따라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을 때.
 - (6) 제 33 조에서 규정한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 정보 관리 시스템 (이하 '협회 시스템' 이라고 함) 또는 오릭스 그룹 및 오릭스 렌트카 점포 사이에서 공유하는 대여 주이자 리스트 (이하 '대여 주이자 리스트' 라고 함) 에 등록되어 있을 때.
 - (7) 당사와 거래 시 당사 종업원, 기타 관계자에게 폭력적 행위를 행사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은 부담을 요구하는 언사를 사용했을 때.
 - (8) 무머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을 때.
 - (9) 별도로 명시하는 대여 조건 및 기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 (10) 그 밖에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을 때.

3 앞 2 항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하고, 임차인은 제 4 조 제 3 항에 준하여 예약 취소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취소 수수료 지불이 있었을 때,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제 10 조 (대여계약 성립 등)

대여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충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2 앞 항의 인도는 제 2 조 제 1 항의 렌트 게시 일시에 동 항에 명시된 렌트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 (대여 요금)

대여 요금은 아래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 근거 등을 요금표에 명시합니다.

제 5 장 반환

제 19 조 (반환 책임)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를 렌트 기간 만료 시 소정의 반환 장소에서 당사로 반환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에 위반했을 때는 임차인은 그로 인해 당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에 따라 렌트 기간 내에 렌트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당사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 20 조 (반환 시의 확인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임회하여 렌터카를 반환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용에 의해 마모된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인도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반환에 있어서 렌트카 안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 찌꺼기 없음을 확인한 후에 반환합니다.
- 3 임차인은 미청산 대여 요금 등이 있는 경우, 렌트카 반환 때까지 그 청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4 앞항 이외에 렌터카 반환 시 휘발유 / 경유 등의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을 경우 (완전히 중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요금표 등에 따라 산출한 연료비를 지불합니다.

제 21 조 (렌트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 임차인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라 렌트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의 렌트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임차인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 없이 임차 기간을 초과한 후에 반환한 때에는 앞항의 요금에 더해 아래에서 규정한 '반환시간 변경 위약료' 를 지불합니다.
- 반환시간 변경 위약료 = 초과한 시간에 따른 초과 요금 × 200%

제 22 조 (반환 장소 등)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소정의 반환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임차인은 반환 장소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게 된 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 12 조 제 1 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했을 때,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 반환 장소 변경 위약료 = 반환 장소 변경에 따라 필요해진 회송 비용 × 200%

제 23 조 (미반환 시의 조치)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동시에 당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이 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미반환이 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형사고소를 실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일 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협회에 대해 미반환 피해 보고를 하는 동시에 협회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2 당사는 앞 항에 해당되었을 때 렌트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 관계자에게 청구 조사를 하거나, 차량위치정보 시스템 작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3 제 1 항에 해당될 경우 임차인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고, 렌터카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 탐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 4 제 1 항에 해당되었을 경우 당사는 해당 렌트카의 일시 말소등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5 제 1 항에 해당하는 렌트카가 발견된 경우 당사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스스로 해당 렌트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품의 보관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 장 고장, 사고, 도난 등

제 24 조 (고장 발견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제 25 조 (사고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사고 대소와 관계 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2) 앞 호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가 지정한 공장에서 실시할 것.
- (3)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 (4)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화해 및 기타 합의를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의 조치를 취하고, 또한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 조언을 함과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제 26 조 (도난 발생 시의 조치)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렌트카 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 외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 (2) 즉시 피해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도난이나 그 외의 피해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출할 것.

제 27 조 (사용불능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그 외의 사유 (이하 '고장 등' 이라 함) 로 인해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여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앞 항의 경우 렌트카 인수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3 고장 등이 대여하기 전에 존재한 결함, 문제, 기타 렌트카가 렌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경우는, 임차인은 당사에서부터 대체 렌트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렌트카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제 5 조 제 2 항을 준용합니다.
- 4 임차인이 앞 항의 대체 렌트카 제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체 렌트카를 제공할 수 없는 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5 고장 등이 임차인, 운전자 및 당사 중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에서부터 대여계약종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6 임차인은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트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이외의 그 어떤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 7 장 배상 및 보상

제 28 조 (배상 및 영업 보상)

- 임차인은 빌린 렌터카 사용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앞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경우,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영업 보상을 합니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빌린 렌터카 사용 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 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29 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이 제 28 조의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 및 운전자가 제 28 조 제 3 항의 배상 책임을 질 때는 당사가 렌터카에 대해 체결한 손해 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1) 대인 보상 1명 한도액 무제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을 포함)
- (2) 대물 보상 1 사고 한도액 무제한: 면책액 5 만엔
- (3) 차량 보상 1 사고 한도액 시가액: 면책액 마이크로버스, 알루미늄 트럭 및 장비차량 (복지 차량 미포함) 10 만엔, 2t 이상 트럭 및 더블덱 트럭 7 만엔, 기타 차량 5 만엔

(4) 인신상해보상 1명 당 3000 만엔까지

2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손해 및 앞항에서 정한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단, 특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 (1962 년 법률 제 150 호) 제 2 조에 따라 특별 재해로 지정된 재해로 인해 멸실, 훼손되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손해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후에 제 9 조 제 1 항 각호 혹은 동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에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손해보험 및 당사의 보상제도에 따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앞 3 항 외에 손해보험 보험 약관의 면책 사항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 보상제도의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에서 정하는 보험 · 보상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6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금을 지불했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가 지불한 금액을 당사에 변제합니다.

제 8 장 해제, 해약

제 30 조 (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에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 9 조 제 1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아무런 통지나催告를 하지 않고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렌터카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앞 항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 31 조 (중도해약)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한 후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렌터카의 대여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2 임차인은 앞 항의 해약을 할 때 다음의 해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도해약 수수료 = (대여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대여계약 시에 정한 반환 영업점 (영업소) 에 드는 편도요금을 제외> - 대여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해약 시의 실제 반환 영업점 (영업소) 에 드는 편도요금을 제외>) × 50%

제 9 장 정보의 등록과 이용

제 32 조 (미반환, 주차위반 등의 등록 / 이용 동의)

임차인은 제 18 조 제 7 항 또는 제 23 조 제 1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가 전국렌터카협회 시스템에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등록되는 점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이에 가입한 각 지부 렌터카협회 및 그 회원인 렌터카 사업자에 의해 대여계약 체결 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10 장 기타 규칙

제 33 조 (GPS 기능)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지구측위 시스템 (이하 'GPS 기능' 이라고 함) 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사 설정의 시스템에 차량의 현재 위치, 통행 경로 등이 기록되는 점 및 당사가 해당 기록을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이의 없이 승인합니다.

- (1) 개별 계약의 종료 시에 셀프 렌터카가 소정의 반환 장소로 반환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 (2) 제 23 조 제 1 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외 렌터카 및 대여계약의 관리를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3)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임차인 및 운전자, 그리고 기타 고객의 만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 (4) 법령이나 정부기관 등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제 34 조 (블랙박스)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에 차체형 사고등록장치 (이하 '블랙박스' 라고 함) 가 탑재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 상황이 기록되며 당사가 해당 기록을 이하 각호에 정해진 경우에 이용하는 것에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1) 렌터카 및 대여계약의 관리를 위해,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당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 (2)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보다 좋은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인, 운전자 및 기타 고객에게 더욱더 높은 만족을 드리기 위해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 (3) 법령이나 정부 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한 경우.

제 35 조 (대리 대여)

본 약관은 당사가 렌터카 보유자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렌터카 대여를 대리하게 하는 거래를 하여,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대여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제 36 조 (상쇄)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금전 채무가 있을 때는, 임차인의 당사에 대한 금전 채무와 언제라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소비세, 지방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당사에 대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8 조 (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 이행을 게을리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해 연이율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39 조 (반사회적 세력 등 배제)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는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표명하고 보증합니다.

-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 탈퇴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을 표방하는 강패 또는 특수기능폭력집단 및 기타 이들에 준하는 자 (이하 이들을 '폭력단원 등' 이라고 함).
- (2) 폭력단원 등에게 경영을 지배받거나 또는 경영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및 그 외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한 관계에 있는 자.
- (3) 자기 또는 제 3자의 부정 이익 목적 또는 제 3자에 대한 가해 목적 등 부당하게 폭력단원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4) 폭력단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제공, 편의 제공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자.
- (5)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범죄에 의한 수익' 에 관계된 범죄 (이하 '범죄' 라고 함) 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당사, 임차인 및 운전자 등은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이용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1) 폭력적 또는 범죄 책임을 넘은 부당한 요구 행위.
- (2) 위협적인 언동, 폭력을 이용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3) 범죄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 (4) 기타 앞 각호에 준하는 행위.

3 임차인 등이 앞 2항을 위반했을 때는 제 31 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40 조 (일본어 약관과 외국어 약관)

당사가 외국어 약관을 정한 경우, 일본어 약관과 외국어 약관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 41 조 (준거법 등)

본 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제 42 조 (세칙)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조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임차인과 합의하지 않고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임차인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 (2)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의 변경이 대여계약의 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본조의 규정에 의해 본 렌탈 가이드 기재사항을 변경한다는 취지의 규정 유무 및 그 내용,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인 때.

2 세칙은, 당사의 영업점 (영업소) 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렌트카 가이드, 팸플릿, 요금표, 홈페이지 등에 이를 기재합니다. 이것을 변경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43 조 (합의관할재판소)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 (영업소)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간이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를 관할재판소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개인 고객 (이하 '고객') 에 대해서는 본 신청 또는 본 계약 (이하 '본 계약') 에 관해 다음 사항을 확인 및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오릭스 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ORIX') 는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를 다음 이용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이용 목적]

- ① 자동차 등의 리스, 신용, 렌탈, 할부 매매, 자동차 보험, 기타 보험 상품의 판매, 자동차 등의 판매, 매입, 정비, 카세어링 등의 ORIX 사업 (사업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https://www.orix.co.jp/auto/>)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에 대한 고객의 신청, 고객에게 드리는 ORIX 의 제안 등 고객과의 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 ② 자동차 등의 리스, 신용, 할부 매매 등의 거래 (신용공여 거래) 시의 심사 및 고객의 본인 확인 시에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기 위함.
- ③ ORIX 가 고객과의 계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조회 대응 및 법령 등 필요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
- ④ ORIX 와 오릭스 그룹 각사 및 기타 회사의 회사 소개, 각종 상품·서비스 소개를 다이렉트 메일 (DM),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기 위함.
- ⑤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 제공 등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함.
- ⑥ ORIX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 ⑦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의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함.
- ⑧ 연선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맹하는 개인신용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적절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함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함) .

2. ORIX 가 보유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ORIX 와 오릭스 그룹 각사 및 ORIX 렌터카 사업, 중고차 판매 사업의 프랜차이즈 각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이용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릭스 그룹 각사의 이용 목적]

- ① 오릭스 그룹 각사의 채권, 자산 상태, 리스크 장악 등 경영상 필요한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함.
- ② 여러분에게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한 마케팅 분석 및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기 위함.
- ③ 오릭스 그룹 각사가 취급하는 상품·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오릭스 사업' 을 확인하십시오) 소개와 제안을 하기 위함.

[프랜차이즈 각사의 이용 목적]

- ① 프랜차이즈 각사 점포에 대한 여러분의 신청, 여러분에게 드리는 프랜차이즈 각사의 제안 등 여러분과의 거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

3. ORIX 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합니다.

ORIX 개인정보처리방침 바로가기: <https://car.orix.co.jp/kr/privacy/>